

# 평창군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57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5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## 1. 제안이유

평창군 주민에게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, 도시환경디자인 활성화 사업과 범죄예방 환경디자인(셉테드) 건축물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관련 위원회 개최 시 범죄예방담당 경찰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 활성화 사업 및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(셉테드) 적용 건축물에 대한 지원 : 안 제8조의2

1) (신설) 군수는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 활성화사업 및 범죄예방 환경디자인(셉테드) 적용 건축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.

나. 위원회 개최 시 범죄예방담당 경찰공무원의 의견청취 : 안 제9조제3항

1) (기존) 위원회의 기능은 「평창군 경관 조례」에 따른 평창군 경관 위원회가 대신한다.

- 1) (개정) 위원회의 기능은 「평창군 경관 조례」에 따른 평창군 경관 위원회가 대행하며, 위원회 개최 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의 범죤예방담당 경찰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붙임 참조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)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

- 1) 입법예고(2025. 4. 29. ~ 2025. 5. 19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  
- 평창군 공고 제2025-672호, 도시과-15965(2025. 5. 20.)호
- 2) 규제심사 : 규제사무 없음 [기획예산과-6487(2025. 4. 23.)호]
- 3) 부패영향평가 : 부패유발요인 없음 [기획예산과-6487(2025. 4. 23.)호]
- 4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 [가족복지과-15911(2025. 4. 23.)호]
- 5) 법제심사 : 적정 [기획예산과-8760(2025. 6. 11.)호]

## 평창군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2(지원) 군수는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 활성화사업 및 범죄예방  
환경디자인(셉테드) 적용 건축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정지원을  
할 수 있다.

제9조제3항 중 “대신한다”를 “대행하며, 위원회 개최 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 
관할 경찰서의 범죄예방담당 경찰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제9조(위원회의 설치·운영) ①· ② (생 략) ③ 위원회의 기능은 「평창군 경관 조례」에 따른 평창군 경 관위원회가 <u>대신한다.</u></p>	<p><u>제8조의2(지원) 군수는 주민안전 보호 도시환경디자인 활성화사업 및 범죄예방환경디자인(셉테드) 적용 건축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9조(위원회의 설치·운영) ①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<u>대행하며, 위원회 개최 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의 범죄예방담당 경찰 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</u></p>

# 관계 법령 발췌

## □ 건축법 [법률 제20424호]

제53조의2(건축물의 범죄예방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,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
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1항의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.

## □ 건축법 시행령 [대통령령 제35221호]

제63조의7(건축물의 범죄예방) 법 제53조의2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.

1. 다가구주택, 아파트,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
2.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
3.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
4. 문화 및 집회시설(동·식물원은 제외한다)
5. 교육연구시설(연구소 및 도서관은 제외한다)
6. 노유자시설
7. 수련시설
8.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
9.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

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

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 활성화사업 및 범죄예방환경디자인(셉테드) 적용 건축물에 대하여 범죄예방 시설 설치지원 시 예산 소요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

## 3. 미첨부 사유

평창군 재정을 고려하여 연간 50백만원 미만 범위내에서 공모 또는 필요시 직접 사업을 통해 주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.

## 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도시안전국 도시과장 이정의
연락처	(033) 330 - 2470